

#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74호

#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0월 13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10. 13. ~ 2022. 10. 27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남*열	1964. 08. 15.	0178200274100008240	₩31,860,000	충북 진천 광혜원면 회족 1 안길
2	김*억	1968. 05. 17.	0178200274100008855	₩47,790,000	충북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
3	권*혁	1969. 05. 01.	0178200274100008854	₩5,310,000	충북 청주 상당구 종고개로
4	박*수	1973. 01. 12.	0178200274100008832	₩31,860,000	대전 동구 성동로
5	이*영	1966. 01. 04.	0178200274100003477	₩17,820,000	경기 수원 권선구 동수원로
6	유*열	1961. 11. 17.	0178200274100008858	₩31,860,000	서울 영등포구 영중로
7	최*필	1983. 02. 01.	0178200274100003467	₩31,860,000	서울 송파구 새말로
8	백*운	1990. 01. 25.	0178200274100003480	₩9,972,000	충북 충주 성터 9 길
9	길*준	1966. 09. 26.	0178200274100004415	₩344,000	대전 유성구 도안대로
10	고*익	1967. 02. 05.	0178200274100008836	₩8,920,800	경기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
11	고*익	1967. 02. 05.	0178200274100008835	₩39,312,000	경기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2	이*욱	1967. 11. 13.	0178200274100008859	₩22,302,000	충북 음성 맹동면 대동로
13	곽*경	1966. 02. 23.	0178200274100008842	₩31,860,000	충북 제천 내토로 59 길
14	권*현	1978. 12. 15.	0178200274100003481	₩35,121,600	충북 청주 서원구 장전로
15	권*현	1978. 12. 15.	0178200274100003487	₩15,921,360	충북 청주 서원구 장전로
16	권*현	1978. 12. 15.	0178200274100003486	₩15,921,360	충북 청주 서원구 장전로
17	권*현	1978. 12. 15.	0178200274100003478	₩35,121,600	충북 청주 서원구 장전로
18	권*현	1978. 12. 15.	0178200274100003471	₩48,780,000	충북 청주 서원구 장전로
19	송*진	1960. 10. 06.	0178200274100008831	₩4,878,000	충북 청주 서원구 사북로
20	송*진	1960. 10. 06.	0178200274100003475	₩35,640,000	충북 청주 서원구 사북로
21	임*숙	1967. 02. 10.	0178200274100003489	₩13,381,200	충북 청주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
22	김*태	1991. 11. 20.	0178200274100003479	₩10,476,000	충북 청주 흥덕구 지동로
23	강*식	1968. 05. 25.	0178200274100003492	₩13,381,200	충북 청주 상당구 호미로
24	유*기	1967. 12. 06.	0178200274100008230	₩1,638,000	충북 청주 서원구 구룡산로
25	이*환	1969. 12. 09.	0178200274100008865	₩22,302,000	충북 청주 청원구 울봉로
26	백*준	1980. 09. 26.	0178200274100008242	₩31,860,000	경기 오산 궤리사로 29 번길
27	길*우	1964. 12. 17.	0178200274100008843	₩31,860,000	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
28	김*원	1976. 03. 28.	0178200274100003466	₩3,540,000	충북 청주 서원구 구룡산로
29	****동원	151114-0*****	0178200274100000152	₩53,100,000	충북 충주 대가미 8 길
30	제이*****	150111-0*****	0178200274100008228	₩10,975,500	충북 청주 서원구 장전로
31	제이*****	150111-0*****	0178200274100008829	₩10,975,500	충북 청주 서원구 장전로
32	*****개발	151111-0*****	0178200274100003476	₩13,275,000	충북 충주 수안보면 조산공원길
33	*****개발	151111-0*****	0178200274100003472	₩26,550,000	충북 충주 수안보면 조산공원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34	(합)와이*****	151214-0*****	0178200274100000160	₩27,921,600	충북 제천 신백로
35	(주)엔터***	160111-0*****	0178200274100004416	₩10,743,900	충북 청주 서원구 산남로
36	(합)이훈***	150113-0*****	0178200274100000155	₩39,888,000	충북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
37	유한회사 **** (이*우)	160114-0*****	0178200274100003777	₩13,275,000	대전 동구 대전로 470 번길
38	김*근	1974. 04. 02.	0178200274100004953	₩8,850,000	대전 대덕구 중리동로
39	이*숙	1970. 02. 12.	0178200274100004903	₩4,487,400	대전 중구 계백로 1660 번길
40	김*현	1979. 03. 29.	0178200274100004964	₩17,700,000	대전 유성구 진잠로 106 번길
41	유*현	1974. 11. 03.	0178200274100004902	₩5,058,000	대전 중구 문창로
42	신*재	1964. 06. 13.	0178200274100004958	₩13,381,200	충남 천안 서북구 개목 3 길
43	김*현	1960. 02. 16.	0178200274100004954	₩20,790,000	충남 천안 동남구 복자 1 길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3, 2105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